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666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강종현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2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26. 선고 2021가소532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8. 6.부터1)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아들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매매대금 13억 원과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모두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E은 매매대금 및 세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2003. 8.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3. 12.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세금을 체납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고, 계속하여 체납 세금이 독촉되고 있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홍, 판사 정영훈, 판사 오연수

1)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1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2022.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2002. 3. 21.부터’로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에 제출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2003. 8. 6.부터’로 기재하였는바, 나중에 제출된 항소장 기재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선택한다.